

중앙선거관위, 12. 19. 선거정보시스템 보안자문위원회의 개최

= 선거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 상황 점검 및 보안 강화 대책 협의 =
= 수사기관 등 적법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으면 서버 공개에 적극 협조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계엄군의 중앙선거관위 선거정보센터 무단 점거에 따른 보안강화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12. 19.(목) 선거정보시스템 보안자문위원회의*를 개최하였다.

* 선거정보시스템 보안자문위원회: 선거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선거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공정하고 중립적인 외부 보안전문가 7명을 자문위원으로 구성

중앙선거관위는 이번 회의에서 계엄군의 선거정보센터 무단 점거와 특정 서버 촬영에 따른 선거정보시스템 보안강화 대책을 설명하였고, 참석한 자문위원들**은 계엄군이 점거했던 중앙선거관위 관제실과 전산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계엄군 점거로 인한 선거정보시스템 서버의 훼손 및 침입 흔적 여부를 점검한 결과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 참석한 자문위원 명단 : 김기형 아주대 사이버보안학과 교수, 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교수,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현재 서버는 중앙선거관위 사무총장 책임하에 보다 강화된 보안시스템을 적용하여 유지·관리되고 있다. 중앙선거관위는 계엄군이 청사를 무단 점거하여 서버실 일부를 사진 촬영하는 CCTV 화면이 외부에 공개되어 보안 강화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서버 교체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

또한, 오늘 회의는 일각에서 제기된 서버 공개에 대한 대응 방안도 논의하였다. 그동안 일부 단체 등은 선관위가 지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서버를 조작하여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고, 이에 투·개표 조작 여부를 밝히기 위해서는 서버 검증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계속 하고 있다.

중앙선관위 서버는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12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침해행위 등의 금지)제27조(비밀유지의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제71조(정보통신망 현황자료관리)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다만, 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검증이나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 권한 있는 기관의 적법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다면 공개에 적극 협조할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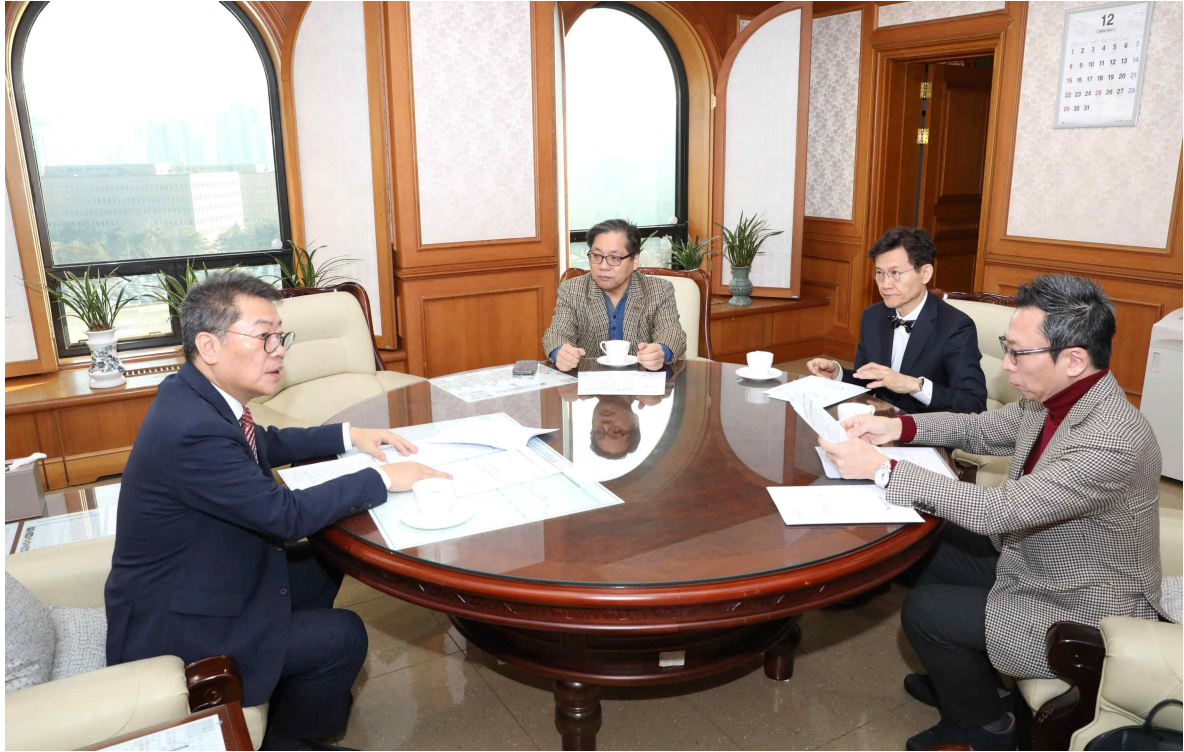
보안자문위원회는 서버를 공개할 경우 주요 소스 코드, 시스템 구조, 서버 정보 등이 외부에 알려지게 되므로 공개 이후에는 서버에 대한 전면적인 재구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한, 서버를 재구축하여 시스템 안정화에 이르기 까지 많은 예산과 1년 이상의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므로 다가오는 선거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이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사안으로 인해 적법절차에 따라 서버가 공개될 경우 향후 선거관리에서 보안상의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고, 자문위원들도 그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선관위의 안정된 선거관리를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

붙임 선거정보시스템 보안자문위원회의 사진 1부

(붙임)

선거정보시스템 보안자문위원회의 사진



2024. 12. 19. 중앙선관위에서 김용빈 사무총장(맨 왼쪽)과 보안자문위원들이 선거정보시스템 보안자문위원회에서 선거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 상황 점검 및 보안 강화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